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 자격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급부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부호 사유
1			[]예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아니오													
2			[]예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아니오													
3			[]예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아니오													
4			[]예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 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
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급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 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0	0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0	0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사람)
52	0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0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0	x	0	0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 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0	x	x	0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0	0	x	0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1. 교육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체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 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리·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부품 조립원 835 전기·전자 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시뮬레이션·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54. 경호·경비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3. 금융·보험직	23. 사회복지·종교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4.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4. 경찰·소방·교도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041 연구·개발·시험·평가 전문가 042 연구·개발·시험·평가 사무원 043 연구·개발·시험·평가 보조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6. 섬유·의복생산직
05.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25. 군인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터너,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6.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 보건·의료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7. 식품가공·생산직
061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2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3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4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5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6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7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8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69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0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1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2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3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4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5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6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7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8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79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080 자연·생명과학 연구원	30. 보건 의료직	61. 영업·판매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07.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2. 운전·운송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071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072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073 소프트웨어 개발자 07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075 데이터 전문가 07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07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치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펠트· 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08. 건설·채굴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7. 건설·채굴직	89. 제조 단순직
081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82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3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4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5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6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7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8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89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1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2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3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4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5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6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7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8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099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10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421 작가·통번역가 42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23 해설·사서·기록물관리사 42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25 디자이너 42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2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 건설·채굴직	90. 농림어업직
09.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 설치·정비·생산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09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6 생명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98 소망·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09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10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10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104 화학공학 기술자 10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106 생명공학 기술자 107 식품공학 기술자 108 소망·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0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운송장비 정비원 814 운송장비 정비원 815 자동차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부호	등록일 (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 표시를 합니다.